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		
의안번호	제137호	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 출 일	2022.10. 6.	회부연월일	2022.10. 6.

1. 제안이유

- 학교, 마을,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기본원칙(안 제1조~3조)
-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범위 및 예산을 지원 근거(안 제4조~6조)
- 역량강화, 전문인력 양성,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~10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는 학교, 마을,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, 「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